

##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36
----------	-----

### 제안이유

- 회관의 주소변경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.

### 주요골자

- 제2조중 “554-6번지”를 “554-58번지”로 개정
- 상위법개정에 따른 이용대상연령 개정 (65세 이상 → 60세 이상)
- 직영과 위탁운영 규정의 내용 및 용어정리

### 첨 부

-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- 관련법규 발췌 1부

##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산554-6번지”를 “554-58번지”로 한다.

제4조중 “65세 이상”을 “60세 이상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운영관리)노인복지회관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 관리하되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토록 할 수 있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안
제2조(위치) 노인복지회관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번지에 둔다	제2조(위치) ..... .....554-58번지.....	제4조(이용대상 및 사용료) ①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충청북도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한다. 다만, 강당등 일부 시설은 일반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	제4조(이용대상 및 사용료) ① ..... .....60세이상.....	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운영관리) ① 노인복지회관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한다.	제6조(운영관리) 노인복지회관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되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토록 할 수 있다.	②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토록 할 수 있다.	.....	.....	.....

## 관계법령발췌

### 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】

제24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) ①법 제36조의  
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: 60세 이상의 자
2. 경로당 : 65세 이상의 자
3. 노인휴양소 :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, 다만, 이용인원이  
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외의 자도  
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
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 
있다.

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